

2026년 제1회 경력직(일반계약직) 공개채용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 제1회 경력직(일반계약직)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4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구분	직급	직렬	업무분야	예정인원	채용방법			임용예정일
						1차	2차	3차	
합계					2명				2026. 06.~07. 중
경력공채	일반계약직	나급	행정(재무회계)	회사채 발행 및 자금관리	1명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행정(노무행정)	노무행정	1명				

□ 보수 : 화성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의함(지원자의 해당경력 등을 고려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

※ 일반계약직 나급 보수 상한액 금66,396천원 ~ 보수 하한액 47,157천원

※ 복리후생 : 공사 복리후생규정 및 내규 등 관련 공사 규정에 의함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근무평가 등을 통해 1년 단위 재계약 등 검토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야간근무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가능)

※ 기본급여 외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임용일은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최대 1년)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관련분야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전공, 자격증, 가점 등에 대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 : 인·적성검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전 직렬	인·적성검사를 통해 3배수 선발
------	-------------------

- 인성(근면성, 책임감, 사교성,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배려심, 침착성, 감정, 정서), 직무능력(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관찰탐구력), 직무적성 등을 측정하며, 인성과 직무능력 부적격 판정 시 과락 판정

다. 3차 전형(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직렬별 개별 또는 PT 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보통(70점)” 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미흡”으로 평정 시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경력공채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 결정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근거한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결격사유 미보유시 최종합격자 확정

마. 예비합격자 결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대 3명으로 하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가. 접수기간 : 2026. 04. 24.(금) 10:00 ~ 2026. 5. 06.(수)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화성도시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 주소창 입력 <https://hu.recruiter.co.kr/career/home> 또는 바로가기 클릭

다.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

원서접수		2026. 04. 24.(금) 10:00 ~ 2026. 5. 06.(수) 18:00
1차전형	서류심사	2026. 5. 11.(월)
	합격자 발표	2026. 5. 14.(목)
2차전형	인·적성 검사	2026. 5. 16.(토)
	합격자 발표	2026. 5. 21.(목)
3차전형	면접전형	2026. 5. 28.(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10.(수)
임용예정		2026. 06.~07. 중 ※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최대 1년)

※ 채용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임용 예정일은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최대1년)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2)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다음전형에 응시할 수 없고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3) 경력 및 학위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심사됩니다.
- 4) 필수자격요건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면허 등)는 반드시 첨부된 자료에 의하며, 서류 미제출 및 열람 불가(암호화)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5)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이내인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보유 시 임용 될 수 없

라. 분야별 자격요건 (직무별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 등 세부 자격요건 이면 참조)

구분	직급	직렬(직무)	자 격 요 건
일반 계약직	나급	행정 (재무회계)	<p>[아래요건 중 1건 이상 충족, 관련분야 및 세부요건 별도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후 당해 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후 당해 분야 경력이 9년 이상인 자 3. 6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상장기업 및 30인이상 사업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당해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경력이 9년 이상인 자 6. 그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 (노무행정)	<p>[아래요건 중 1건 이상 충족, 관련분야 및 세부요건 별도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후 당해 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후 당해 분야 경력이 9년 이상인 자 3. 6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상장기업 및 30인이상 사업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당해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경력이 9년 이상인 자 6. 그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 6 그 밖의 자격 :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p>

※ 직무 분야 및 자격증 등 세부 자격요건 하단 참조

마. 채용직렬별 세부 자격요건(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구분	관련 분야(관련경력, 전공 등)	관련 자격증
일반계약직 나급 (행정, 재무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채(채권) 발행 실무 및 법인 자금조달(대출) 관리 경력 ※ 경력증명서 내 세부 업무 반드시 표기 (단순 재무회계 업무 기재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계약직 나급 (행정, 노무행정)	아래 2가지 경력사항 중 1가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관리, 자문, 노동사건, 노사관계 업무 등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 내 세부 업무 반드시 표기 (세부 업무 미기재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노무관리, 자문, 노동사건, 노사관계 업무 등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 내 세부 업무 반드시 표기 (세부 업무 미기재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필수자격] 공인노무사

※ 관련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4.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원서접수 시 전산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채용접수 사이트 동의
3	경력직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 - 성명 및 학과를 제외한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마크 삭제 - 관련분야 전공 및 학위 기재 필수(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구분 필수) -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진위여부 확인 목적)	스캔 파일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 또는 재직증명서 일체 ※ 근무처, 직위(직급) 및 세부담당 업무, 주당 근로시간,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관련 담당업무 상세내역 반드시 기재, 상세내역 미기재 시 일체 미인정 (예시) 행정(재무회계) 지원 시 세부 업무 내용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내 단순 '재무회계' 업무 기재 시 경력 미인정 경력증명서 내 '공사채 발행 및 자금 운용 관련 업무' 등 기재 시 경력 인정 ※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 -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인정 불가 ※ 주당 근로시간, 발급자 서명, 연락처 양식 등이 없을 시 제출 증명서 내 수기 작성 및 제출 가능 ※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스캔 파일 업로드
5	채용자격기준 상 경력기업의 상장기업여부 및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자공시시스템, 나이스기업정보 등 상장기업여부 및 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전자공시시스템만을 활용하여 기업규모 확인 ※ 확인불가 시 경력불인정 및 최소점수 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스캔 파일 업로드
6	경력증명서 해당기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 [제출서류 4 경력증명서]와 별도로 필수제출 사항임	스캔 파일 업로드
7	자격증 사본(필수자격요건 증빙서류 모두 포함) ※ 진위여부 확인기간이 존재할 경우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스캔 파일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자격증 사본(증빙서류 포함, 해당자에 한함) ※ 진위여부 확인기간이 존재할 경우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필수 자격증 외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시 서류 제출 ※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스캔 파일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
9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 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	스캔 파일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
10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365포털 또는 VMS포털에서 발급받은 스캔 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4]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제출서류6]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필수제출 사항으로 **두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누락 될 경우 경력 미인정으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제출서류7]의 자격증 또한 필수제출 사항으로 누락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출생년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101-*****)

※ 임용등록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5. 채용서류의 반환 파기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 채용서류에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6.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자 비율은 법령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 5% 또는 10%씩 가산
-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 10%씩 가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

구 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기간3년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배 점	5	4	3	2	1

7. 기타사항

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출생년도 (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 -*****),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 조희 시 임용 될 수 없습니다.

-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 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달 응시, 연락 불능, 제출 서류 암호화 등에 따른 열람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hu.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카.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합니다.
- 타.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1@hu.or.kr)으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파.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붙임1]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교육부(031-8012-7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항목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관련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채용홈페이지 첨부파일 제출)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등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의사진단(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임산부의 경우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0000.00.00)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 확대문제지 등 : 확대문제지(118%, 150%), 축소문제지(82%), 확대답안지 (118%, 150%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_입사지원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원직종	업무직	시험구분	<input type="checkbox"/> 필기전형 <input type="checkbox"/> 인적성전형
지원업무분야		출생월일	
성명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소	□□□□□		
구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시적 장애 등 <상세기술>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카드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의사 진단(소견서)		
편의제공	문제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축소문제지 (<input type="checkbox"/> 82%)	
	답안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필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아라비아 숫자 표기	
	시험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	
요청사항	장애인 보조기구 (본인지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명칭()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사항 :)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허용 <input type="checkbox"/>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 <input type="checkbox"/>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